

第10回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9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日 時 1991年12月31日(火) 10時30分  
場 所 會議室

### 議事日程(第9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鍾路區公印條例案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公印條例案 ..... 1面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13面

(10時30分 開議)

○議長 李斗鶴 議員님 여러분!

오늘 아침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55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재적의원 22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定期會 第9次 本會議 開議를 宣布합니다.

### 1. 서울特別市鍾路區公印條例案

(10時31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鍾路區 公印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康聖喆 市民奉仕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康聖喆 市民奉仕室長 康聖喆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께서 本條例案을 심의해 주시기 전에 地方議會가 출범한 원년 마지막 회에 저희 안전을 처리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연말로써 저희가 案件을 제출해서 노고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91年 6月 19日 大統領令 第13390號로 제정 공포된 政府의 事務管理

規定 第41條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制定 施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公印에 대한 規則은 88年 5月 1日字로 우리 鍾路區 自治區가 설치되면서 우리 鍾路區의 管인 규칙이 제정 施行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政府의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本 條例가 시행되게 되면 기왕의 規則은 자동으로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內容에 대해서 지금부터 說明드리겠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여러 議員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案의 內容을 참고로 해주시고 전체적인 事項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說明드리겠습니다.

公印이라는 것은 行政機關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使用하고 있는 廳印과 직인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청인이라는 것은 합의제기관에서 使用하고 있는 公印을 말하는 것이고 직인이라는 것은 區廳長이나 洞長 또는 보조기관같은 그런 직위에 대신해서 使用하는 것을 직인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製造나 管理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 條例를 施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인의 비치와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은 第3條에서 정하여진 鍾路區廳長의 직인은 市民奉仕室長이 이것을 전담해서 管理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장의 직인은 문서를 취급하는 係長이나 課長 등이 되겠고 동장직인은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管理하게 되어 있고 民願事務用 직인은 민원주임에게 비치 관리 관수토록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公印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 이것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登錄하고 공고까지 해가지고 전부 使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細部事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 條例의 制定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인규칙에 의해 가지고 조각해서 使用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使用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管理에 있어서 이 條例에 의해서 전부 管理를 하고 기왕에 조각된 것은 이 條例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內容은 간략하나 이번 條例 內容의 전체적인 대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事項의 說明이 요구될 때 자세한 說明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提案說明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特別市鍾路區公印條例(案)

제출년월일:1991年 12月 日

제출자:서울特別市鍾路區廳長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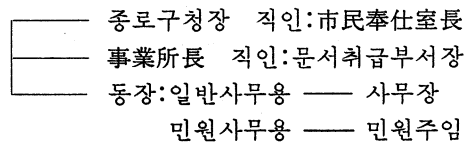
○事務管理規定(大統領令 第13390號 91. 6. 19)및 동 規定 施行規則 (總理令 第395號, 91. 9. 30)이 제정 公布됨에 따라 현행 “서울特別市 鍾路區 관인규칙”을 廢止하고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印條例”를 제정함으로써 공인관수 및 管理에 충실을 기하고자 管理方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基本原則

을 정함 (案 第3條)

• 비치 및 관수 부서 지정



○公印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印刷使用 등에 관한 細部事項 및 서식을 정함 (案 第3條 내지 第15條)

• 규격, 인영의 內容, 公印의 材料, 적는 위치에 관한 細部規則

• 公印交付, 등록, 재교부신청, 폐기신고, 공고, 인영의 보존 인영의 印刷使用 등에 관한 細部規定

• 서식제정: 공인 교부(再交付)신청, 공인대장, 인영대장, 공인 印刷用紙管理臺帳, 공인사고보고서 등

3. 參考事項

○關聯法規:사무관리규정 (大統領令 第13390號)

—第41條 (公印) 지방자치단체의 公印에 관하여는 이 장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豫算措置:별도조치 필요없음

4. 條例案

서울特別市鍾路區公印條例(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事務管理規定 第41條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鍾路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行政機關”이라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公印의 종류) ① 公印은 行政機關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使用하는 청인과 行政機關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交付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行政機關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議決機關,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諮問機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第1號 외의 機關은 그 機關長의 직인  
을 가진다.

3. 地方自治法 第95條 第1項의 規定에 의  
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行政  
機關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事務  
處理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第3條(公印의 비치 및 관수자) ① 區廳長  
의 공인은 市民奉仕室에, 기타 機關의 長  
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備置하고  
당해 備置 부서의 長이 이를 관수한다.

② 民願事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公印을 一般事務用과 民願事務用으로 구분  
하여 備置, 使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民願事務用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내부 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  
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使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公印  
交付機關으로부터 따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洞長의 공인중 一般事務用은 事務長이,  
民願事務用은 민원주임이 관수한다.

第4條(規格)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第5條(인영의 內容)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  
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  
은 機關의 명칭에 “印”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名稱에 “印”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第6條(公印의 材料) 공인의 材料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材質을 使  
用하여야 한다.

第7條(찍는위치) 公印은 그 機關 또는 직  
위의 名稱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  
록 찍는다. 다만, 등, 초본 등 民願書類  
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第8條(公印의 交付, 登錄) ① 공인을 교부  
받고자 하는 機關은 별지 第1號 서식에  
의하여 區廳長(이하 “交付機關”이라 한다)  
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交付機關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交付하는 때에는 별지 第2號 서  
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登錄하여 保

存하여야 한다.

第9條(再交付申請 및 廢棄申告)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그 事由를 들어 별지 第1號  
서식에 의하여 第8條 規定에 의한 交付  
機關에 再交付要請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 또는 기타의 事由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當該 公印의 交  
付機關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  
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方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다만, 行政機關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事由로 그 公印을 保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政府記錄保存所에 이관  
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公印 交付機關은 공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記載하고, 그 인영을 登錄하여 保存하여야  
한다.

第10條(공인대장) ① 公印交付機關은 별지  
第2號 서식의 공인대장을 備置하여 공인  
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錄整理  
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毀損, 磨滅되는 일이 없도  
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第11條(公告) 공인을 交付, 再交付 또는  
廢棄한 때에는 交付機關이 다음사항을 명  
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公告하여  
야 한다.

1. 공인의 交付, 再交付 또는 폐기사유
2. 交付, 再交付公印의 최초사용년월일 또  
는 폐기 公印의 폐기년월일
3. 交付, 再交付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公告機關의 장

第12條(인영의 보존)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매년 2月 1日 현재의 인영  
을 별지 第3號의 서식의 인영대장에 捺  
印하여 保存하여야 한다.

第13條(인영의 印刷使用) ① 事務處理를  
주관하는 부서의장 (이하 “처리과의 장”  
이라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印刷하여 使  
用하고자 하는 때에는 當該 공인을 管理

하는 부서의 장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業務 遂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用度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縮小 印刷하여 使用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印刷하여 使用하는 때에는 별지 第4號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備置하고 그 使用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第14條(公印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第5號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交付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5條(공인의 保管) 公印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勤務時間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保管하여야 한다.

第16條(사전날인 등) ① 公印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事項은 交付機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會計關係公務員 공인에 관한 事項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附 則

① (施行日):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이 條例 施行當時 종전의 規程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1]

공인의규격 (第4條 관련)

(단위:센티미터)

구 분		한변의길이
직인	○구 청 장	2.4
	○동 장	2.1
	○사업소장	
	-4급,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소	2.1
	-6급 공무원인 사업소	1.8
청인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별지 第1號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발신 (인)

수 신

참 조

공인교부 (재교부)신청

제 목

공인폐기신고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교부(재교부, 폐기)사유		
폐기 대상	폐기에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소각 이관 기타( )
처리	폐 기 자	소속 : 성명 : 직급 :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대 장

날인년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신조개각	년 신조개각	년 신조개각	년 신조개각



[별지 제4호 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매)	확 인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인 영	
2. 사 고 발 생 일 시 및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議長 李斗鶴 市民奉仕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市民奉仕室長님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憲中議員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憲中議員 金憲中議員입니다.

행정관서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公印條例가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業務가 첫째 大統領令으로 91年 6月달에 하달되었고 또 國務總理訓令 등등 해가지고 91年 9月 30日 하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무얼하다가 이제 와서 31日날 마지막 날 市民奉仕室에서는 議員들이 區廳의 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區行政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同僚 議員님들! 그리고 市民奉仕室長님!

오늘 우리 議員들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地域住民과 더불어 대화하는 마지막 날이올시다. 찾아오는 사람은 만나줘야 되고 서로서로 1년을 決算하는 마지막 날이올시다.

이것은 오늘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어용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너무나不快하고 사전에 각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2, 3日전에 議案이 도착합니다. 한 두시간 전에라도 읽어보고 나와야지요? 더욱 더 지금 市民奉仕室長님의 설명하는 事項에 대해서는 관인의 規格, 동장의 도장의 가로가 몇 센티미터, 세로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區廳長의 직인이 세로가 몇 센티미터, 가로가 몇 센티미터, 크기는, 깊이는 이런 걸 質疑를 합니다. 언제부터 使用할 것이며 왜 여태껏 있다가 오늘 第9次 本會議를 소집해서 절차나 방법이 소홀하고 성의없는 부서의 태도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年度에는 이렇게 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절차상 合法的이고 合理的인 行政을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서 나왔고 市民奉仕室長님이 얼마나 行政에 능

통하신지는 모르지만 이 案에 대해서는 절대 가결해줄 수 없으며 可決해주시는 議員님들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웃음소리)

분명히 저는 이 단상에서 이런 것을 발본색원하고 개정해야, 뜯어고쳐야 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이 案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정말 엄청난 答辯을 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 몇분 사이에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박겉핥기로 해서 條例를 통과시킨다면 議員들을 경시하는 態度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첫째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몇가지 質疑에 대해서 가로, 세로의 區廳長 직인 洞長 직인 등등을 질의하고 언제부터 使用할 것이냐, 또 이것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떤 處理를 할 것이냐 하는 問題까지도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예,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議員님들이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金憲中議員님께서 실상에 입각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아시다시피 지난 9月 30日에 總理室에서 이것이 制定되어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지금까지 쓰던 관인 自體를 地方化시대에 적합하게 개정시키자는 데 內部條例라고 다 알고 계신만큼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또 우리 議會를 소홀히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質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質疑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겸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康聖喆 金憲中議員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책하신 데 대해서 달게 받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적극 努力을 하겠습니다. 다만 金憲中議員님께서 叱責하신대로 그런 나름대로의 경위를 잠깐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月달에 大統領令이 되어서 사실상

施行規則이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이條例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改正案을 해 가지고 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全國적으로 施行하게되는 條例에 대해서는 一般的으로 內務部나 市廳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檢討해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뺄 事項은 빼가지고 우리 自治區에 맞는 그런 條例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 條例準則이 내려온 것이 지난 23일에야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지금 金議員님께서 질책하신대로 結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事例가 발생하지 않도록 努力을 하겠으니깐 이것만큼은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職印規格에 대해서는 지금 각 議員님들이 갖고 계신 것에 添附된 서식의 第1에 있습니다. 區廳長 것은 정사각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23mm입니다. 2.4cm, 약 1인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洞長의 것은 21mm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事業所長 4급, 5급에 준하는 경우 21mm, 6급 公務員의 사업소인 경우 18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6급 공무원의 事業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21mm 이상이 되겠고 廳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의제기관이라든가 자문기관에서 使用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큼니다. 35mm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刻印의 길이는 특별히 規定된 것은 없습니다. 마모라든가 이런 것을 勸案해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刻印을 해서 조각을 해가지고 使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施行日字는 여기서 오늘 議會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것의 공포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公布된 날로부터 바로 施行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과거에 쓰던 모든 官印의 조각이나 등록 使用 公告에 대해서는 이 條例에 의해 가지고 모두 조각이 되고 등록이 되고 使用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

씀드린대로 오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 깊숙히 새기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斗鶴 金憲中議員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金憲中議員 議席에서—저는 절대 부결입니다.)

金憲中議員! 비단 이 件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91年度의 종지부를 찍고 '92年度에는 새로운 기본에서 더욱 더 行政機關이 우리 議會에 대한 정성을 다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채적질의 말씀으로 아로 새기고 '92年度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議長이 명심해서 우리 議會의 活性化와 議會의 여러 議員님들의 위상에 차질이 없도록 行政機關에 촉구하는 전체아래 여러 議員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質疑가 없으시면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議員님 나오셔서 討論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千相旭議員입니다.

金憲中議員이 질의하신 것은 백번 생각해 도 妥當합니다. 우리 市民奉仕室長께서 말씀하시기를 6月 19日날 施行令이 공포가 되어서 條例라든가 그 준비가 12月 23日날 시달되었다고 하지만 12月 23日이면 그 당시 저희들이 本會議가 계속 開會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협의할 수가 있었고 단 하루 전이라도 案이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어 檢討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案도 보내지 않고 提案說明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저는 계속 훑어보았습니다마는 條例의 內容·規格같은 것을 提案說明하실 때에도 具體적으로 병행해서 우리한테 說明을 해주었으면 저희들의 異議가 없었을 텐데 한 마디로 성의가 없어보인다. 관인이라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시하는 公務員의 자세가 엿보인다는 뜻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92年度부터 바로 관인을 使用해야 되는 이런 급한 問

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金憲中議員님께서 나오셔서 용서하는 발언을 우리가 듣고 본 原案대로 可決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意見を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예. 金憲中議員님 어떠십니까? 나와서 말씀해보시지요.

○金憲中議員 죄송합니다. 저 혼자 떠들어서 가장 존경하고 있는 議長님, 副議長님 그리고 제가 제일 믿고 있는 同僚 議員님들!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마무리를 짓는 '91年度 마지막 날이니까 아량을 베푼다는 의미에서 더욱 더 저도 여러 議員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千議員님도 좋은 말씀해주셨고 또 議長님께서도 말씀을 좋게 해주시고 또 市民奉仕室長도 나오셔서 사과를 해주셨고 '92年度에는 이런 문제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욱 더 우선 區廳의 가장 중요한 직인의 使用을 우선 간단하게 보면 우리 鍾路區의 얼굴로 對內外的으로 표시하는 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제가 배우기로는 서양 문명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조 500년 전부터 '선금상수현도인목'이라고 해서 모든 議論을 하고 決議를 하고 약속을 하는 데 도장을 찍어야 效力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大韓民國에서는 꼭 도장을 찍어야 실효를 거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市民奉仕室長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직인이 對內外的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또 아까 千議員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檢討할 시간, 알고 넘어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줄속으로 通過시키려고 또,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 그런 생각에서 나오셨다는 것이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議員님과 議長님이 계신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지막으로 사과겸 여러 議員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金憲中議員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깊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그칠까 하는데 여러 議員님들! 어떠십니까?

(「중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討論을 그치고 이 案에 대해서 異議없이 滿場一致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印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0時55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2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에도 洞別順位에 따라서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마침 사직동의 鄭命浩議員이 11시가 넘어서 도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出席으로 간주해서 사직동의 鄭命浩議員과 삼청동의 千相旭議員을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시면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것으로 第9次 本會議를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근 60日동안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月 15日 우리 鍾路區 議會가 개원한 이후에 오늘날 어언 9개월을 맞이하는 이때 저희들은 그동안 비록 奉仕名譽職이라 할망정 모든 現在의 고생을 무릅쓰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으로 정성을 다해왔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議長으로서 돌이켜볼 때 우리 議員 22名 中 한 분의 낙오도 없이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地域發展과 구민의 복지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저희들은 떳떳하게 생각하고 고개숙여 재삼 재삼 감사의 말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議員님들! 이 해도 그럭저럭 저물

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本會議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생업의 마지막 날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무척 바쁜 애절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여러분께 재삼 고마운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9個月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졌고 많은 일도 해왔고 저희들은 사심없이 우리 區民을 위해서 일해온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맞이하는 '92年度에는 우리 모두가 區民과 더불어 더욱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욱 더 금년을 거울삼아 '92年度에는 우리 區政 행정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내실있는 議會運營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다짐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것을 재삼 감사드리면서 閉會辭에 가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30日間の 會期를 모두 마치고 第10回 定期會의 閉會를 宣布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時58分 閉會)

○出席議員 18名

李斗鶴	李憲九	千相旭
玄壽漢	玄孝善	沈載得
李萬魯	鄭鍾九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陳琦植	朴禹信	林臥龍
田永泰	金憲中	孫光一

○關係公務員

市民奉仕室長 康聖喆